

◆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

공제구분	공제대상 및 공제금액	제출서류										
기본공제 (본인·배우자· 부양가족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직계존속</td> <td>직계비속</td> <td>형제·자매</td> <td>위탁아동</td> <td>수급자</td> </tr> <tr> <td>만 60세 이상 ('02.12.31.이전)</td> <td>만 20세 이하 ('02.1.1.이후)</td> <td>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</td> <td>해당과제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</td> <td>제한없음</td> </tr> </table>	직계존속	직계비속	형제·자매	위탁아동	수급자	만 60세 이상 ('02.12.31.이전)	만 20세 이하 ('02.1.1.이후)	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	해당과제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	제한없음	주민등록등본 /가족관계증명서/기초생활수 급자증명서/입 양사실확인서 또는 증명서/가정위 탁보호확인서
	직계존속	직계비속	형제·자매	위탁아동	수급자							
만 60세 이상 ('02.12.31.이전)	만 20세 이하 ('02.1.1.이후)	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	해당과제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	제한없음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요건 :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경우 (종합소득금액+퇴직소득금액+양도소득금액 합한 금액을 의미)만 공제대상. 												
추가공제 (경로·장애인· 부녀자·한부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로우대자공제 : 만 70세 이상(1952.12.31. 이전 출생)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: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 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한부모 공제 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)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<p>※ 주의 :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.</p>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										
연금보험료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 :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											
보험료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											
주택자금 공제산식:(㉠×40%)+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, 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, ㉢주택마련저축납입액 한도 : ㉠+㉡ = 400만원 ㉠+㉡+㉢ = 1800만원·1500만원·500만원·400만원 ㉠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*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「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」 참조 	다음 페이지 「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」 참조										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2000년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) 개인연금저축(본인명의)액 :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X 40% (연 72만원 한도) 	저축납입증명서										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 : 500만원·300만원·200만원)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 	공제부금 납입증명서										
주택마련저축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대상 	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										
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동거입양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, 기명식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(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) ※ 연령제한은 없음 공제금액 : [전통시장, 대중교통 : 40%,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, 신문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 : 30%,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: 30%, 신용카드 사용분 : 15%] *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(총급여액×25%)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*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* 공제한도액 :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: Min(총급여액×20%, 300만원) 총급여액 7천만원 ~ 1억2천만원 : 25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: 200만원 ※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추가 	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										
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출연금액 공제액 : Min[출연금액, 400만원(1,500만원)] 	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										
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 (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 공제제외) 	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										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%를 소득공제(연1,000만원 한도) 	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										

공제구분		공제대상 및 공제금액		제출서류															
중소기업취업자 감면 (청년 90%, 청년외 70%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(청년 5년), 150만원 한도 감면 대상 : 청년(만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종업종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) 		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															
외국인 기술자 감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50% 세액감면 (단,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 : 3년간 70%, 이후 2년간 50%) 																	
핵심인력 성과보상금 감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중 기업기여금 부분(중소기업 50%, 중견기업 30%) (청년 : 중소기업 90%, 중견기업 50%) 																	
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감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감면세액 : 50%(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차감) 																	
근로소득세액공제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근로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이하</td> <td>근로소득산출세액 × 55%</td> </tr> <tr> <td>근로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초과</td> <td>715,000 + (근로소득산출세액 - 130만원) × 30%</td> </tr> </table>	근로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이하	근로소득산출세액 × 55%	근로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초과	715,000 + (근로소득산출세액 - 130만원) × 30%													
근로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이하	근로소득산출세액 × 55%																		
근로소득산출세액 130만원 초과	715,000 + (근로소득산출세액 - 130만원) × 30%																		
		*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-50만원 → 50-20만원으로 축소																	
자녀세액공제 (손자녀 적용불가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0만원), 자녀 3명 이상(30만원 + 2명 초과 1인당 30만원) 출생·입양 세액공제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 * 자녀세액공제 대상 :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 	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															
연금계좌 세액공제 (공제율 12%·15%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퇴직연금·연금저축 납입액의 12% 세액공제(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5%) - 50세 미만 :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400만원,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300만원) - 50세 이상 : 연 9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600만원,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50세미만과 한도 동일) 		연금납입확인서															
특 별 세 액 공 제	보험료 (공제율 12%·1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 :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금액 제한 있음)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, 근로제공기간 납입분만 대상 공제금액 : (보험료납입액, 100만원 한도) × 12% 또는 15%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, 100만원한도) 		보험료 납입증명서															
	의료비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 :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금액 제한 없음)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* 공제대상의료비 : 진찰, 진료,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, 치료, 요양을 위한 의약품(한약포함) 구입, 보정용 안경, 콘택트렌즈구입(50만원이내), 보청기구입,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, 산후조리원 비용(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),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분만 대상(보험회사등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) (미용, 성형수술 비용,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) 공제금액 : [㉠(본인, 65세이상자,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- 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) × 15% (난임시술비는 30%, 미숙아등의료비는 20%) (㉢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지급액 - 총급여액 × 3%, 700만원 한도)] × 15% 		의료비용수증등 / 의료비 지급명세서															
	교육비 세액공제 (공제율 15%) (학자금대출상환 액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: 전액(대학원포함) 대학생 : 1명당 900만원한도(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대학원 제외)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: 1명당 300만원 한도(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)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(직계존속포함) 소득요건은 있으나 연령요건은 없음 		교육비 납입증명서															
	기부금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 :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금 지급한 경우(정치·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명의 만), 소득요건0, 연령요건 X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부금 종류</th> <th>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</th> <th>세액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정치자금기부금</td> <td>근로소득금액 × 100%</td> <td>10만원 이하 : 100/110 10만원 초과 : 15% (3천만원 초과분 25%)</td> </tr> <tr> <td>② 법정기부금</td> <td>(근로소득금액 - ①) × 100%</td> <td rowspan="3">법정기부금 + 지정기부금 +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</td> </tr> <tr> <td>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</td> 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</td> </tr> <tr> <td>④ 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</td> 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10% + [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의 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]</td> </tr> <tr> <td>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</td> 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기부금 종류	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세액공제율	① 정치자금기부금	근로소득금액 × 100%	10만원 이하 : 100/110 10만원 초과 : 15% (3천만원 초과분 25%)	② 법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) × 100%	법정기부금 + 지정기부금 +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	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	④ 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10% + [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의 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]	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	
기부금 종류	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세액공제율																	
① 정치자금기부금	근로소득금액 × 100%	10만원 이하 : 100/110 10만원 초과 : 15% (3천만원 초과분 25%)																	
② 법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) × 100%	법정기부금 + 지정기부금 +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																	
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																		
④ 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10% + [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의 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]																		
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																		
		* 법정(지정)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.																	
월세 세액공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 등을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(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동일해야 함) 공제율(공제한도 : 연750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총급여 5,500만원 ~ 7천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500-6,000만원 포함) : 12% ② 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포함) : 15% 		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															

[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]

구분	그 밖의 소득공제	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		세액공제
	주택마련저축납입액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	월세액 세액공제
공제 대상	-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-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한 청약저축 불입액	-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-국민주택규모주택을 -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의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	-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-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-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	-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-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료
기타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①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(일용근로자 제외)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②세대주 요건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③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		
요건	-청약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-청약종합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-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(월 15만원 이하)	<차입금요건> 1)대출기관 차입 시: 입주일, 전입일(갱신 이주 포함)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2) 거주자 차입 시 :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1.2%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	-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 -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일 것	-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이하자 -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-전입신고
대상 주택	(`09.12.31. 이전 가입자의 경우)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시는 공제가능	-국민주택규모 -주거용 오피스텔 포함	-규모요건 삭제(`14년부터) -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(`19년전 차입금은 기준시가 4억이하) (`13년전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+기준시가3억이하) -오피스텔 제외	-국민주택규모 -주거용오피스텔포함 -주거용 고시원 가능 -부양가족명의로의 임차주택 공제가능
공제 금액	납입액의 40%	원리금상환액의 40%	이자상환액	월세액의 10(12)%
공제 한도	연간 400만원 한도			75만원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 90만원)
	- 상환기간10년이상 +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		: 연400만원	
	- 상환기간15년이상		: 연500만원	
	- 상환기간15년이상 +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		: 연1,500만원	
증명 서류	-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	-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-주민등록표등본 -(거주자차입 시)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 할 수 있는 서류)	-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-주민등록표등본 -분양가액확인서류(공시가격 알리미)	-주민등록표등본 -임대차계약서 사본 -월세액 지급 증명서류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 등)
주의 사항	-주택청약종합저축 (무주택확인서를 은행 등에 익년 2월까지 제출)	-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 작성 및 상환 필요 -법인,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	-무허가주택, 농가주택 포함 -사업용, 판매목적주택 포함 -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(상속 제외)	-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